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4185 발의연월일: 2024. 9. 23.

발 의 자:김준형・이해민・권칠승

황명선 • 윤종오 • 황운하

정혜경 • 박지원 • 한정애

김재원·조 국·서왕진

박은정 · 신장식 · 윤후덕

강경숙 · 김선민 의원

(1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안보 및 국제평화 유지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쟁·사변 중의 국가에 구리 등의 물품 수출과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상으로도 교전의 일방 당사국 에 무기를 수출한 사례가 없음.

그런데 최근 정부 관계자들은 교전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지원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 바, 이는 한반도 안보에 위기를 초래하는 행위로서 최근의 조사에서 확인된 국민여론에도 반하는 것임.

이에 전쟁·사변 또는 천재지변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물품 등의 수출과 수입 제한·금지 조치를 현행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함으로써 전쟁중인 국가에 대한 무기지원을 원천적으로 차단

하여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헌법에 따른 국제평화 유지 의 무를 이행하려는 것임(안 제5조). 법률 제 호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외무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4호"를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품등의 수출과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여야 하고, 제4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	제5조(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
조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등의 수	
출과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	
할 수 있다. 다만, <u>제4호</u> 에 해	<u>제1호에 해당</u>
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하는 경우에는 물품등의 수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등의 수	과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
출, 수입, 경유, 환적(換積) 또	여야 하고, 제4호
는 중개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